푸드트럭 튜닝 절차

1 튜닝 절차도

< 자동차 튜닝(구조 변경) 승인절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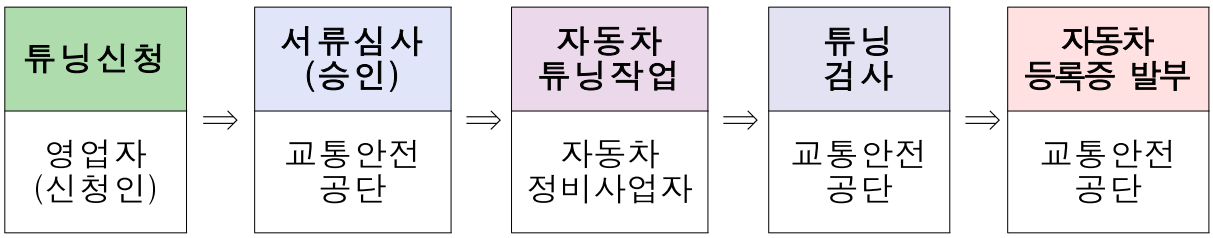

2 푸드트럭 영업자

○ **(튜닝 승인 신청)** 지동차소유자는 튜닝 전 교통안전공단에 이동형 음식판매자동차로 튜닝 승인(사전 서류심사) 신청*

* 튜닝승인 신청시 튜닝승인신청서, 튜닝 전·후의 주요제원 대비표, 튜닝 전·후의 자동차외관도, 튜닝하고자 하는 구조·장치의 설계도 첨부

○ **(튜닝 검사 신청)** 튜닝 승인을 받고 그에 따른 자동차정비사업자의 튜닝작업이 완료된 후 교통안전공단에 튜닝검사(자동차 구조변경후 실물검사) 신청*

- 튜닝승인을 받은 후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튜닝작업과 그에 따른 정비를 받고, 승인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함

* 튜닝검사 신청시 자동차등록증, 튜닝승인서, 튜닝 전·후의 주요제원대비표, 튜닝 전·후의 자동차외관도, 튜닝하고자 하는 구조·장치의 설계도, 튜닝작업완료증명서 및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첨부

3 교통안전공단

○ **(튜닝 승인)**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튜닝 승인 신청을 받으면 자동차 안전기준 등 조건에 적합시 '튜닝 승인서' 발부

*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(자동차의 튜닝)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5조(승인대상 및 승인기준)

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경·소형 화물자동차일 것
- 조리 작업장의 높이는 1.5m(경차1.2m)이상, 면적은 0.5m^2 이상 확보할 것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서 정하는 가스설비의 설치·작동 상태는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(설치시에 한함) 등

○ **(튜닝 검사)** 튜닝 작업이 완료된 차량에 대해 튜닝 검사 후 적합시 자동차등록증 ㊴란에 '이동식 음식 판매 자동차(LPG 사용시설 완성검사필)' 기재 후 발급

* LPG 사용시설이 없는 경우 '이동식 음식 판매 자동차'으로 기재

4 자동차정비사업자

○ 튜닝 작업을 완료한 자동차 정비업자는 튜닝 작업완료증명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

참고 **제작차량 등록 절차**

1 제작차량의 개념 및 절차도

○ 화물차 구입 후 튜닝을 하는 경우가 아닌 최초부터 푸드트럭 또는 푸드트레일러로 제작된 차량(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푸드트럭 또는 푸드트레일러로 제작하는 경우, 이하 '제작차량')

< 제작차량 승인절차 >

기술검토 신청	⇒	서류심사 (제원통보)	⇒	자동차 제작	⇒	안전검사	⇒	안전검사증 발부
자동차 제작자		교통안전 공단		자동차 제작자		교통안전 공단		교통안전 공단

2 세부 내용

○ **(기술검토 신청)** 자동차제작자(자기인증능력이 없는 경우)는 교통안전공단(자동차안전연구원)에 제작차량 기술검토(서류심사) 신청

○ **(제원통보)** 교통안전공단은 기술검토 후 제작자에게 제원통보

○ **(안전검사 신청)** 자동차제작자는 차량제작 후 교통안전공단에 안전검사(실물검사) 신청

○ **(안전검사)** 교통안전공단은 안전검사 후 안전검사증 발급

* 최초 1대에 대해서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를 마친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경우 이후부터는 안전검사만 실시

○ **(차량등록)** 제작차량 구입자는 안전검사증과 기타 자동차 등록관련 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음

* 제작시 LPG 사용시설을 함께 설치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교부 이후 LPG 완성검사 실시, 제작 후 LPG 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'자동차튜닝' 절차를 따름